

기업지배구조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3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선정한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CoE(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미준수시 사유 설명) 방식으로 작성된다. 여기서 10가지 핵심원칙은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공통된 요소 중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공시 제도는 참여하는 회사 수가 저조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단, 기업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p><b>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법인(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로 신고</li> <l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를 요구</li> <li>•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별표에 명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이관)</li> </ul> <p><b>2.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29조제1호 및 제29조제2호의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대상)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경우, (2) 거래소가 정정요구하였음에도 정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li> <li>• (제재수단)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li> </ul>	<p><b>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 (제7조의2제1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li> </ul> </li> <l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거래소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7조의2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li> </ul> </li> <li>• 정정공시 요구와 관련한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 (제7조의2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미포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li> </ul> </li> </ul> <p><b>2. 자율공시 관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 (제8조제7호의2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공시 대상(대규모법인 제외) 명시 등</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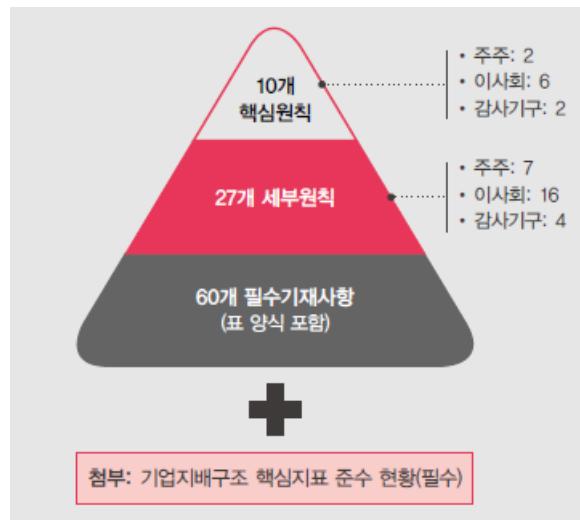
삼일회계법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2019년 4월에 제정된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에 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CoE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가지 핵심원칙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제시된 원칙에 대해 CoE 방식에 따라 준수 여부와 그 근거를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한다. 따라서 모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세부원칙 중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각 기업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준수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미준수 사항에 관해 ① 기업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②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대신 채택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기업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구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가지를 추린 것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표이다. 준수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명을 기재한다. 보고서 이용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기초로 기업간 지배구조 차이를 손쉽게 비교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구분	핵심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참고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신구 대비), 2020.3.31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7, 201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정리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8, 2019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2, 2020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